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902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부도·도산 우려 등 명시 (박민규의원안)	3

I. 개요

1.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90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민규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6. 1. 8.
- (3) 회 부 일 : 2026. 1.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입점 피해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일선 세무서들이 피해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조사 유예제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거나, 납세자의 조사 유예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강행한 사례가 발생함.

국세청은 재발 방지 및 적극적인 세정지원 안내 등을 약속하였으나, 현행법상 경영위기에 놓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 유예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음. 특히, 질병, 장기출장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은 세무조사 연기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남.

참고로 「국세징수법」의 경우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막대한 경영손실로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포함한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세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2항 개정).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부도·도산 우려 등 명시(박민규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81조의7) ○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제2항) - (대상)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 - (신청요건) 아래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제1호)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제2호)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제3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제4호) - (신청방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	□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현저한 손실, 부도·도산 우려 등 명시 ○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제2항) - (현행과 같음) - (신청요건) 아래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박민규의원안 2026. 1. 8. 발의(의안번호 15902)

□ 개정안은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에 “천재지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세무조사 유예 사유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천재지변’ 이외에는 세무조사 유예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은 ①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② 납세자 등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곤란한 경우, ③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및 ④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을 세무조사 유예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경영손실로 부도 또는 도산 위험에 직면한 기업을 세무조사 연기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기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에 의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을 세무조사 연기 신청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특히,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기업의 재무·인력·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 유예를 통해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수익성 개선·유동성 확보 등 경영 정상

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둘째, 개정안은 ‘경영위기’라는 객관적 사유를 연기 사유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자의성을 축소하고 제도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현행법은 “천재지변”만 세무조사 연기신청 대상으로 명시한 후, 구체적인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령은 ① 납세자 등의 질병, 장기출장 등 개별적 사안, ② 재난, 질병·장기출장, 장부 등의 압수·영치 등에 ‘준하는 사유’라는 포괄적·불확정적인 개념 등을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재량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이에 비해 개정안은 ‘경영위기’라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객관적 사유를 연기신청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세무조사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셋째, 「국세징수법」은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등 재정적 부담 완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¹⁾ 본 개정안은 기존 제도와 조응하여 세무

1)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조사 단계에서도 유사한 보호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조사·과세·징수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정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음.

- 한편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① 기업의 경영위기는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안별로 재량적으로 포섭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실익이 낮고, ② 「국세징수법」에 이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 등 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③ 특정 사건이나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조사 유예를 일반화할 경우 과세형평 및 조사제도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런데 ① 시행령이 과세당국에 세무조사 유예에 관해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결정권자 및 결정 시점에 따라 개별 사안의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경영위기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에 대해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할 경우 과세당국의 재량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어 개정 실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또한 ② 국세징수단계에서의 납부 유예와 세무조사 유예는 그 취지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도인 점,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대응 자체가 경영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부유예 제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납세자 지원체계 보강조치를 불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나아가, ③ 개정안의 취지는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강제하기보다는 경영위기 기업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세무조사 유예 필

요성을 검토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²⁾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제 경영위기 여부·탈세 시도 정황·자산은닉 가능성 등 구체적인 판단요소는 개별 사안에 대한 승인단계에서 과세당국이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조사제도의 중립성 및 과세형평은 현행 재량통제 구조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현행법 중 세무조사 연기 사유인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세무조사 유예사유를 현행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적용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경우 인명 피해·공급망 붕괴·평판 훼손 등 천재지변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비재산적 손실 등 다양한 피해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연기 결정 시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149